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69 발의연월일: 2023. 1. 13.

발 의 자:권명호·김석기·김용판

김희국 • 백종헌 • 이주환

임이자 · 정경희 · 정우택

지성호 • 한무경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보조금 관리법」 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, 「보조금 관리법」 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.

이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

여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6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3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에 참여한 예비창업자, 기업, 학교, 기관,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63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중 |
| |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|
| | 사업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|
| | 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 |
| | 사업은 제외한다)에 참여한 예 |
| | 비창업자, 기업, 학교, 기관, 단 |
| | 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63 |
| |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 |
| |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
| |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|
| |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|
| | <u>수 있다.</u> |
| |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|
| | 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|
| |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|
| |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 |
| | 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|
| |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|
| |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|
| | 수할 수 있다. |
| |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 |
| | 적인 기준과 감면 등에 관하여 |
| 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|

<u> 정한다.</u>